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75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정재 · 안철수 · 조지연
김위상 · 임종득 · 박덕흠
이달희 · 최은석 · 김재섭
박충권 · 최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국제적 품질기준과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면,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사업 주기로 인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

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을 “반도체 분야 기술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반도체 분야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

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 <u>반도체 분야 기술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기술</u>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	2. ----- ----- -----

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 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인공 지능, 소형모듈원자로-----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2) (생략)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

<u>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u>	<u>가전락기술연구개발시설</u>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	-----
029년 12월 31일까지 투	-----
자하는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